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등록말소 절차 신설 및
등록취소·등록말소 시 재등록 등 제한 〉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05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2026. 5. 6.
3. 회 부 일: 2026. 5.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

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제2호 및 제12조의2).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자발적인 등록말소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일정 기간 재등록하거나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4항제2호라목·마목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 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 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의 경우 가. ~ 다. (생략) <u><신설></u>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이 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 리·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법인인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당시의</u>

현행	개정안
<u><신설></u> ⑤·⑥ (생략) <u><신설></u>	<u>임원을 포함한다.</u> <u>마.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을 포함한다.</u> ⑤·⑥ (현행과 같음) <u>제12조의2(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u> ① <u>제1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u> ② <u>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u> ③ <u>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자는 금융소비자와 중개한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는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본다.</u> ④ <u>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u>

□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업종을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금융상품판매업은 다시 금융상품을 직접 계약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과 이를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으로 구분¹⁾하고 있음.

< 금융상품 판매채널 유형 >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직접 판매업자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포함)	은행·저축은행·여전사·증권사·신탁·신탁중앙회 공제사업 부문·P2P업자·대부업자·증권금융회사 등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투자권유대행인·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대출모집인·대부중개업자 등
자문업자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투자자문업자(자본시장법)·독립자문업자(금소법)

자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 자료(금융감독원, 2023. 9.)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4.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현행법 제12조²⁾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다만,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³⁾ 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는 신탁 공제상품모집인, 대출모집인(리스·할부금융 중개인 포함) 및 독립금융 상품자문업자⁴⁾가 있음.

○ 그리고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는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1.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3) 투자권유대행인, 비독립 투자자문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보험업법), 신용카드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등

4)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금융상품자문업자(‘독립성 요건’을 갖춘 자)

경우,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⁵⁾

- 그런데,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등록의 말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 현재 업무 매뉴얼⁶⁾을 통해 업무를 중단 또는 종료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등록기관(금융감독원, 협회)과 구체적인 종료 시기 및 그 사유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영업종료 표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하면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며,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하고, 등록말소 후에도 기존 금융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는 때까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 상품) 등록 심사 매뉴얼(2026. 5.)

려는 것임.

- 또한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5년, 등록이 말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면서, 동 내용을 임원 결격요건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등록말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단기간 내 재등록하거나 다른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 재진입을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등록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검사·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발적 등록말소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말소 거부 또는 유예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은행연합회는 제재 회피 등 말소 신청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말소 신청을 거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서 관련 사유를 구체화하거나, 단순 말소와 제재 회피 목적 말소를 구분하여 재취업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둘째, 개정안은 등록이 말소된 자를 ‘금융소비자와 중개한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는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말소 이후에도 기존 소비자와의 거래 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등록하고 업을 영위해야 하는 자인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신협 공제상품모집인, 대출모집인)는 대리·중개 업무를, 금융상품자문업자(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 업무를 주로 금융상품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수행하고, 계약 체결 이후의 거래 관계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히 대출성 상품 등 장기간 지속되는 금융계약의 경우 등록말소 후에도 장기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지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동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되,

- 만약 소비자보호를 위해 등록말소 후에도 일정한 의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면 민원·분쟁 처리 협조, 자료 보존, 기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등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경우 폐업 후에도 기존 대출 계약에 따라 이자 수취 등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특성이 있어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필요하나,⁷⁾ 대리·중개업의 경우 계약 이후의 거래 관계는 직접판매업자가 주로 담당하므로 동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셋째,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말소된 경우에는 3년간 재등록 및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 취임(이하 “재등록 등”이라 함)을 제한하고 있는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부적격자의 재진입을 제한할 필요는 있어 보이나, 재등록 등 제한의 적용대상·기간 및 사유 등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년간 재등록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형벌·제재 이력에 따른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1.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임원 결격기간에 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5년,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2년으로 차등하여 규정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히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는 점, 다른 업권의 유사 입법례에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법인보험대리점 임원 등에 대해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을 서로 다르게 규정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록취소 시 재등록 등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는 것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등록)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 가. 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보험업법」 상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 (보험회사) 5년, (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법인GA임원) 2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재등록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개정안은 등록이 말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하여 3년간 재등록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단순 영업종료 등 정당한 사유로 등록을 말소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재등록 등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재 회피 목적의 말소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신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말소 거부 또는 유예 사유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이 법’, 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만 재등록 등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적격자의 진입 차단이라는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보험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금융관련법률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의 재등록 등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 당시의 임원을 모두 재등록 등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없는 임원까지 일률적으로

재등록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등록 등 제한 대상은 등록취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직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08